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17민사부

공 고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예규(재민 2004-7) 제8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할 사항 -

1. 분배계획안인가결정(덧붙임). 끝.

2017. 11. 28.

재판장 판사 부 상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7 민 사 부 (합 의)

결 정

사 건 2012가합 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분배계획안을 인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분배관리인이 2017. 11. 3. 별지 기재와 같이 분배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위 분배계획안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4074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 대리인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으로 23,252,9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 원고 대표당사자와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계약서상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화해, 조정, 판결 등 어떠한 사유로든 한국투자증권 또는 피고로부터 추가 만기상환원리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받아내는 경우 이를 성공으로 보고 해당 경제적 이득액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2심 제기 후 판결, 화해, 합의 등으로 추가 만기상환금(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만기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1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점, 이 사건 소송은 2012. 3. 2. 제기된 후 2017. 2. 9.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구성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를 손해배상원리금 12,011,231,498원의 1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1,981,853,197원으로 정한 것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된다.

○ 그 밖에 분배의 기준과 방법,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권리신고의 기간·장소 및 방법, 권리의 확인방법,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등 별지 기재 분배계획안의 나머지 사항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된다.

2017. 11. 23.

재판장 판사 부 상 준

판사 손 혜 정

판사 강 명 중

별지

분배계획안

사 건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김 순 덕 외 5명
피 고 도이치뱅크 이계

1. 총원의 범위 및 채권 총액

가. 총원의 범위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2007. 8. 31.경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원금비보장형)” 을 매수하였다가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들

나. 채권 총액 (손해배상채권 원금)

8,585,896,483원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 8,585,896,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2가합17061 판결)

- 73,482,462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자 2017카합34074 결정)

나.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1) 권리실행금액

- 12,084,713,960원(기존 권리실행금액 12,011,231,498원 + 예상 권리실행
금액 73,482,462원)
- 1심 판결 후 판결원리금 가지급으로 이루어진 기존 권리실행금액은
12,011,231,498원¹⁾이며, 위 금액은 2017. 1. 24. 전액 현금으로 임의 지
급받아 법원보관금규칙에 따라 법원보관금으로 공탁되어 있음.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4074호 사건)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실행금액은 73,482,462원임.

2) 분배할 금액

분배할 금액은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에서 소송비용 23,252,980원
과 변호사보수 금 1,981,853,197원(계산내역은 아래 3. 나. 와 같음)을 공
제한 금 10,079,607,783원임.

1) 8,585,896,483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 24.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3) 권리실행금액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²⁾는 분배관리인에게 귀속시켜 분배관리인에 대한 보수 및 분배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5조의 잔여금과 같이 처리함.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가.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1) 소송비용

23,252,980원(첨부 1. 소송비용 내역)

2) 분배비용

약 17,988,800원 [= 분배관리인 보수³⁾ 11,000,000원 + 분배계획안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1,716,800원(464명 × 3,700원) + 권리확인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1,716,800원(464명 × 3,700원) + 현금 계좌 이체 수수료
약 232,000원(464명 × 500원) +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약 23,200원(464명

2)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재판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639호, 시행 2017. 3. 1.)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 0.1%의 이자가 지급되는 바, 이 분배계획안 작성일을 기준으로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3) 분배관리인의 보수는 분배관리인을 돕는 실무진들의 보수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정한 분배관리인의 업무인 분배계획안 작성, 464명의 구성원의 권리신고에 대한 각 확인, 분배보고서, 분배종료보고서 각 작성 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분배계획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안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하는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50원) + 공인회계사의 보수⁴⁾ 약 3,300,000원))

3)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지급방법

- 소송비용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실행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함.
- 분배비용은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만약 분배비용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배관리인이 분배관리인보수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하고,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5조의 잔여금 처리 시에 잔여금과 같이 처리하기로 함.

나. 변호사보수

1) 보수액

- 1,981,853,197⁵⁾원(12,011,231,498원 × 0.165)
-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소자들과 원고대리인간에 체결된 사건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소송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화해, 조정, 판결 등 어떠한 사유로든 소외 한국투자증권 또는 피

4)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함.

5) 소수점 이하는 버림

고로부터 추가 만기상환원리금(한국투자증권이 2009. 8.경 지급한 만기상환금을 넘어서는 추가 만기상환원리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받아내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고 해당 경제적 이득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2심 제기 후 판결, 화해, 합의 등으로 추가 만기상환금(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만기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의 1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허가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민사본안소송의 2심 제기 후 피고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원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손해배상원리금에 해당하는 금 12,011,231,498원의 16.5%(15%에 부가세 1.5%를 더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 1,981,853,197원이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함.

2) 지급방법

현금으로 지급함.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 각 구성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함.
- 각 구성원의 손해액은 각 구성원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 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8.6%)과 실제

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9%)과의 차액임.⁶⁾

- 결국 각 구성원이 지급받을 현금의 액수는 [(권리실행금액 12,084,713,960원 - 소송비용 23,252,980원 - 변호사보수 1,981,853,197원) × 해당구성원의 손해액 /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임.

5. 권리신고의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권리신고의 기간

법원의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3개월 안에 권리신고서가 분배관리인에게 도달하여야 함)

나. 권리신고의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우편번호 : 06601)

다. 권리신고의 방법

첨부 3. 안내문을 참고하여 첨부 2. 권리신고서 양식에 따라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위 권리신고의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 제출하거나, 분배관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소송닷컴 (<https://onlinesosong.c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본인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함.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2가합17061 판결문 별지3 손해액표 손해액란 기재 금액과 동일함.

6. 권리의 확인방법

가. 권리의 확인방법

권리의 확인은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1273호)에서 소외 한국투자증권이 2012. 4. 9.자로 제출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의 매수자 인직사항, 매수 및 상환내역에 의하여 확인함을 원칙으로 함.

나. 권리확인 통지 일시 및 방법

권리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구성원과 피고에게 통지함.

다.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 방법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신고인 또는 피고는 권리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가. 분배금의 수령기간

권리확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모두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간

나. 분배금의 수령장소 및 방법

사건담임자인 법원사무관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로 현금 계좌이체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주소변경의 신고

분배계획 고지 이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게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 내역
2. 권리신고서
3. 안내문

첨부 1

소송비용 내역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인 지 대	15,302,800	
	승 달 료	65,770	실제 지출한 비용 산입(환급액 71,930원 제외)
	보 관 금	7,782,660	신문공고비
본안관련 소송허가 신청사건	인 지 대	3,000	1심 1,000원 + 3심 2,000원
	승 달 료	75,910	1심 64,980원 실제지출비용 산입(환급액 64,980원 제외) 3심 10,930원 실제 지출비용 산입(환급액 21,570원 제외)
본안비용 소계		23,230,140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1,000	
	승달료	21,840	
신청비용 소계		22,840	
합 계		23,252,980	

첨부 2

권리신고서

사 건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고(대표당사자) 김 순 덕 외 5명
피 고 도이치뱅크 아게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1. 권리신고인의 인적사항

가. 권리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성명 또는 상호 ()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나. 권리신고인의 주소

1) 주소 ()

2) 전자우편 주소 ()

다.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담당자 성명 표시) ()

라. 휴대전화번호¹⁾ ()

※ 신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1)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분배전자 진행상황이 통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권리신고의 내용

손해액 ()원

※ 첨부 3. 안내문 1. 항을 참조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여 권리신고 장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우편번호: 06601))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권리확인통지 방법(통지받고 싶은 방법을 택일하여 ○ 표시)

주소로 우편 송달	전자우편 통지

● 첨부 : 신분증 사본

2017.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분배관리인 귀중

안 내 문

귀하께서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분배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결금을 분배받지 못하실 수 있는바, 권리신고서의 세부사항 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권리신고서 2.항에 기재할 손해액

귀하께서 권리신고서 2.항의 '손해액 ()원' 부분 괄호 안에 기재하실 손해액은 별지 계산표의 '손해액' 란에 쓰인 금액입니다. 위 손해액은 귀하께서 이 사건 추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경우 상환 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8.6%)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9%)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실제 분배받게 되는 분배금은 위 손해액과 그 수익이 다른데(분배받으실 금액은 판결금(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지급받게 될 소송비용액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귀하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¹⁾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을 분배금이 아닌 위 손해액을 권리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지급받을 분배금이 각 구성원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연동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판결금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지급받게 될 소송비용 합계 12,084,713,960원 - 소송비용 23,252,980원 - 변호사보수 1,981,853,197원) × 귀하의 손해액 / 전체구성원의 손해액. 변호사보수는 이 사건 세소자들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판결금의 16.5%(15% 및 부가가치세 1.5%)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권리신고서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타인명의계좌로 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권리신고 장소인 법무법인 한누리(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전화번호 : 02-537-9500))로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계좌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